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394
------------------	-----

제출년월일 : 2002. 11. .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적용의 범위) 김포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제3조(사전공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 및 관련 신관소에 통보
- 제6조(사업자의무)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등)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 모자복지법 제15조

□ 기타 참고사항

-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공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031-329-2053 2002/11/18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본문 ▾

발의자 : 용인시장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문개정 2000.12.29 조례 제303호

개정 2001. 3. 16 조례 제3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 등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등)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1개월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관련단체의 홍보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관련 업무담당과는 장애인 등의 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가정대상자, 국가유공증명하는 서류(다만, 공부로 확인가능한 경우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지방공기업이 주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시장등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두 결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하나의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5개이상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여성담당관, 회계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인·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 (설치계약등) 이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계약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기간 만료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관 계 법령 발췌 서

□ 장애인복지법

第38條（生業支援）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障碍人の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碍인이 담배事業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障碍人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障碍인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 판서는 당해障碍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碍人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第25條（生業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 食料品·事務用品·新聞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 이상의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모자복지법

第15條（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 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母子家庭 또는 母子福祉團體에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

제공처 : 기획감사담당관 031-550-2053 2002/11/14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본문 ▾

발의자 : 시장제출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7.03.27 조례제603호]

개정 200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1. 12. 29>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자리를 위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사회복지과에 통보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통보를 받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설치 희망자는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로 하며,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구비(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 1부
2. 삭제<2001.12.29>
3. 삭제<2001.12.29>
4. 삭제<2001.12.29>
5. 삭제<2001.12.29>

6. 모자복지단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본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증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7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후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등)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3.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29]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1.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200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1개월 전에 시보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모자가정 대상자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노

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는 대리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 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8조의 규정에 위반 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1년 6월 30일 인정하고 기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까지 인정한다.

부 칙(개정 3001.3.16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명칭(상호)	영업의종류 매점,
영업장소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의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

용인시장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유족포함)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공처 : 기획감사담당관실 031-590-2053 2002/10/18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본문 ▼

발의자 : 시장체출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1.01.10 조례제042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또는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이하 장애인등 이라 한다)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①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등) ①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주택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①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모자가정대상자, 노인등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1개의 공공기관만으로 하며, 동일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따로 설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허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행자의 운영기간은 당초 설치허가자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설치허가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3년以内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허가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허가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한다.